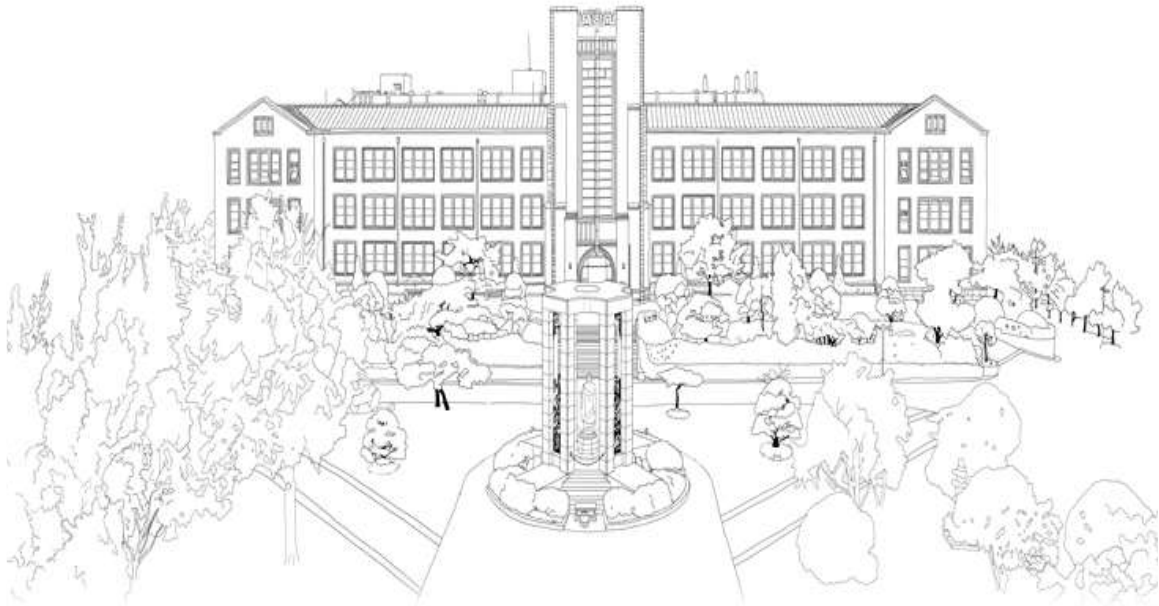


과업지시서

- 동국대학교 위험수목 전정 용역 -



2020.04.

1. 과업의 목적

- 가. 우리 대학 위험수목을 제거하여 잠재적 안전 저해요소 제거로 구성원 안전확보
- 나. 조경수목에 대한 전지 및 전정 작업 실시로 미관 확보

2. 과업의 개요

- 가. 용역명 : 동국대학교 위험수목 전정 용역
- 나. 계약기간 : 착수후 3주이내
- 다. 과업대상 및 분야 : 서울캠퍼스 위험 수목의 제거 및 임목 폐기

3. 현황 및 과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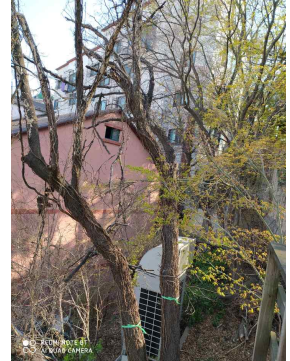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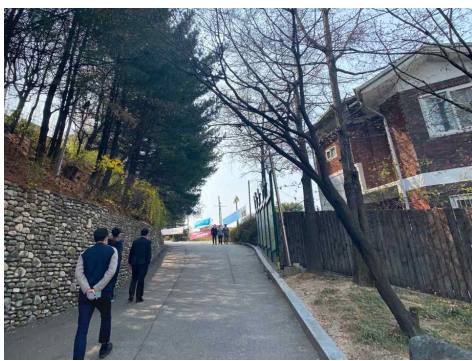
- 가. 작업 구간 및 고려사항

분류	위치 및 주요 수종	작업 고려 및 특기사항
1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회관 하부 ⇒ 스트로브잣나무외 ■ 후문~학생회관 좌,우측면 ⇒ 대왕 참나무, 스트로브잣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사지로 장비 사용 불가 ■ 충분한 인력 확보 필요 ■ 상습 외부민원 발생구역
2구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해광장입구~계산관 ⇒ 소나무, 스트로브잣나무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비 사용가능 ■ 만해광장 ~ 정보문화관 P동 앞 주차구간까지 수목 전지작업 실시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노정보기술센터 하부 ⇒ 고사목 	

- 나. 과업의 내용

- 1) 서류 관련
 - 용역 착수계 및 현장대리인계, 착공전 현황 사진대지 제출
 - 완료후 완료계, 완료 사진대지, 임목폐기물 처리 관련 증빙자료 등 제출
- 2) 교내 위험수목 전정 작업 완료후 임목폐기물 처리
- 3) 작업중 안전관리 및 현장관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 보양 등 작업
- 4) 전정용역 시행 구간내 작업은 가능한 장비를 사용할 것

다. 관련 사진대지



1구역 참고용 사진

라. 특기사항

- 1) 본 용역의 범위 및 내용은 반드시 발주처 담당자에게 확인하여야 함
- 2) 반드시 현장 확인후 견적하도록 하고, 임목 폐기물 처리비용을 포함할 것
- 3) 안전 확보를 위하여, 작업자는 작업중 항상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교내 구성원 이동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 4) 사고방지를 위하여, 현장대리인은 현장내 상시 상주하고 현장을 비울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처 담당자에게 승인을 득하고 대리자를 배치하여야 함
- 5) 대금지급은 교내 행정절차에 따라 검수부서의 검수 완료후 2주 이내 지급을 원칙으로 함. 세금계산서 발행은 검수완료후 발주처 요청시 발행할 것.

일 방 서

1. 범 위

가. 본 시방서는 “동국대학교 위험수목 전정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서 계약서,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나. 시방은 특별시방서에 기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본 시방에 따른다.

2. 감독원의 임무

가. 감독원은 규정 등 정하여진 사항의 범위내에서 그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용역에 관한 통지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원을 경유하여야 하고 감독원은 이를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임무

가. 계약상대자는 시방서와 설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에 임하고,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며, 용역수행에 수반하는 모든 사고 및 피해를 발주자와 상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나. 설계서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르거나 관련용역과 부합되지 않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또한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지라도 용역 내용상 당연히 시공에 요하는 사항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 및 현장요원은 용역관리, 기술관리, 안전관리, 인원관리 등 담당용역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용역계약서 및 설계서에 의거하여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마음대로 작업 현장을 벗어날 수 없다.

마. 계약상대자는 용역중 기존시설의 파손이 있을 경우 원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시행청이 서면에 의하여 해당용역의 마지막 인계를 받을 때까지 용역 목적물에 대한 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잔재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치 하여야 한다. 다만, 간선도로변 절개지 상에서 발생하는 잔재는 감독원이 정하는 장소로 반출하여야 한다.

4. 용역관리

4-1. 계획서 제출

4-1-1. 공정계획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명시된 바에 따라 용역 전반에 대한 종합공정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정해진 양식의 공정표를 착공 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1-2. 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정표에 의거 현장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요구시 인력동원, 자재반입계획 및 시공도 등이 포함된 세부 시공계획서를 작성,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안전관리

5-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2020년 위험수목 정비용역” 를 시행함에 있어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계획, 실시, 사후관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본 시방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 동 시행령, 동 시행규칙, 동 규정에 의한 노동부 고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안전, 건설관련 법령에 따라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항상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고, 차량 등 중량물 이전 또는 장비를 사용한 작업이 진행될 경우 안전 신호수 등을 주변에 배치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6-1. 설계변경 근거

감독원은 건설용역집행규정 제16조에 의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6-2. 설계변경 사항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시행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가. 현장여건에 따른 용역량의 증감

나. 기타 당용역 사정에 의한 변경

7. 용역 일시중단 및 공기연장

7-1. 용역 일시중단

감독원은 다음 각 사항에 해당될 때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용역 진척이 어려울 경우

나. 계약상대자가 설계서, 시방서에 의거하여 용역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8. 현장정리

준공 검사 전 가설건물 및 용역 잔재 등은 용역장 외로 반출하고 정비수목 현장적치로 인하여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뒷정리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9. 사진대지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사진과 정비 후 사진을 찍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특 기 시 방 서

1. 계약상대자는 작업 시행전 감독관과 함께 현장을 완전히 파악한 후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업현장은 경사도가 30도 이상되는 산림, 주택가 연접 공원, 도로변 절개지 등으로 위험성이 많으므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도로와 접하고 있는 용역현장 작업시에는 충분한 인부를 투입하여 보행자통행과 차량통행을 철저히 통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주택가와 연접하고 있는 임야내 수목을 정비할 때에는 인접주택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보양을 실시하고, 작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5. 작업 후 발생하는 임목폐기물은 현장에서 반출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적치하고 잔가지가 남지 않도록 뒷정리를 명확히 하며, 임목폐기물 재활용업체에 인수 시 계약상대자가 상차하여야 한다.
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이에 따른 피해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여야 함은 물론 민·형사상의 책임도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용역장에서 민원발생 소지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8. 작업 내용에 대하여 감독관 확인을 득한 후 종료하여야 한다.